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 29. 이민석 의원 외 6명

나. 회부일자: 2020. 1. 29.

다. 상정일자: 제235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20.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이민석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등을 규정한 조례에 의사상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마포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비율을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안 제1조 외)

연번	자치법규 명	개 정 내 용	비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문신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제1항제1호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조문 내용 일부 개정 (별표 1. 제7호) - 본문 중 “국가유공자가”를 “국가유공자 등이”로 개정 - 조문신설 (별표 1. 제7호)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탑승하여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개정조례안은

이민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20년 1월 29일 제안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연유를 살펴보면, 2019년 11월 이민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0년 1월 2일 조례 제1288호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 의사상자 등에게 ‘구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제1항제1호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비고 제7호를 각각 개정하여 의사상자 등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에서도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본 조례 2건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 8. 기 타: 없 음

 처음으로